

1. 제품 등록 및 갱신

○ 주요내용

- 2014년 말부터 태국 수입식품의 식약청 등록 시 서류가 아닌 전자시스템에 입력하는 ‘수입식품 신고제도(LPI/License Per Invoice)’가 시행. 이는 태국 식약청의 수입식품 등록의 전산화로 보다 엄격한 수입품 관리, 세관 수입신고 목적으로 함. 단, 수입자 입장에서는 전산 시스템이 복잡하고, 추가적인 절차로 통관 소요시간이 더 길어짐
- 더불어, 기존 태국 식약청에 등록된 한국 식품을 신규로 갱신(1년마다 갱신 등록필요)할 때, 처음 등록 시 제출한 HACCP 인증서와, 한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HACCP 인증서의 양식 및 발급처가 상이하여, 태국 식약청에서 문제 제기로 등록 갱신이 지연. 최근 들어 지연이 심화되어, 애로사항 해소요청

○ 방콕사무소 대응내용

- 식약처 확인 결과,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되던 HACCP 인증서가 ‘14년 11월 29일부터 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”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, HACCP 인증서 양식 및 발급처가 변경되었음
- 이에 aT 방콕사무소에서는 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”으로부터 HACCP 인증서의 발급처 변경을 안내하는 공문서를 요청하여 받았으며, 태국 식약청에 제출하여 원활한 등록이 진행되도록 요청

http://www.haccpkorea.or.kr/notice/notice_01.do?type=view&seq=12616



예전 양식



‘14년 11월 변경된 신양식

1. (김) 일반사항

- 태국 식약청에 김 수입 등록 시, 별도 안전성 검사 없음. 또한 최근 비소 등 중금속으로 인한 이슈는 없었으며, 특히 금년부터 한-아세안 FTA에 적용이 되어, 기존 5%에서 무관세로 변경되어, 수입 확대 추세

2. HS코드, 관세

- HS코드 : 2106.909900
- 수입관세 : 없음